

## (부동산) 감정평가표

본인은 감정평가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감정평가이론에 따라 성실하고 공정하게 이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였기에 서명날인합니다.

감정평가사

최원호

최원호 (인)

감정평가액	삼익팔천구백사십사만오천원정 (₩389,445,000.-)					
의뢰인	대구지방법원 사법보좌관 이종식		감정평가 목적	경매		
제출처	대구지방법원 경매1계 경매1계		기준가치	시장가치		
소유자 (대상업체명)	최상호 (2025타경7665)		감정평가조건	-		
물건목록 표시근거	귀제시목록		기준시점	조사기간	작성일	
기타 참고사항			2025. 04. 04	2025. 03. 03 ~ 2025. 04. 04	2025. 04. 07	
평 가 내 용	공부(公簿)(의뢰)		사정		감정평가액	
	종별	면적 또는 수량(m <sup>2</sup> )	종별	면적 또는 수량(m <sup>2</sup> )	단가	금액
	토지	132	토지	132	2,680,000	353,760,000
	건물	36.26	건물	48	500,000	24,000,000
	제시외물건	(47.3)	제시외물건	47.3	-	11,685,000
		이	하	여	백	
	합계					₩389,445,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 별 지 참 조 "

## (토지 · 건물) 감정평가명세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 목 용 도	용도지역 및 구 조	면 적 (㎡)		감 정 평 가 액		비 고
					공 부	사 정	단 가	금 액	
1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882	대	제3종 일반주거지역	132	132	2,680,000	353,760,000	
가	상동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중구 2·28길 26-2 (남산동)	위지상	단독주택	목조 와즙지붕 1층					
			주택	1층	36.26	48	500,000	24,000,000	관찰감가 900,000 x25/45 실측사정
	<b>소 계</b>							<b>₩377,760,000</b>	
	<제외물건>								
㉠	동 소	882	주택	시멘트벽돌조	(35.4㎡)	35.4㎡	300,000	10,620,000	
㉡	동 소	882	주방	시멘트벽돌조	(3.9㎡)	3.9㎡	150,000	585,000	
㉢	동 소	882	창고	목조	(8㎡)	8㎡	60,000	480,000	2층 소재
	<b>소 계</b>							<b>₩11,685,000</b>	
	<b>합 계</b>							<b>₩389,445,000.-</b>	
				이	하	여	백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

## I. 감정평가의 목적

본건은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소재 '명덕초등학교' 북측 인근에 위치하는 부동산으로서, 대구지방 법원 경매1계의 경매 진행을 위한 감정평가 건임.

## II. 감정평가의 기준 및 감정평가조건

### 1. 감정평가의 기준 및 기준가치

본건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감정평가 실무기준」 등 제반 관련 법규에서 규정하는 평가방법 및 감정평가 일반이론에 의거하여 평가하였으며, 기준가치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에 따라 시장가치를 기준하여 감정평가액을 결정하였음.

### 2. 기준시점

본건 감정평가의 기준시점은 가격조사 완료일인 2025년 4월 4일임.

### 3. 실지조사 실시기간

본건의 물리적 현황 및 시장분석 등을 위한 실지조사는 2025년 3월 3일 ~ 2025년 4월 4일에 실시하였음.

### 4. 감정평가조건

-.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

---

## III. 기타 참고사항

### 1. 물적 동일성 여부 및 공부와의 차이

본건은 공부와 현황이 일치하여 물적 동일성이 인정됨.

### 2. 임대사항의 확인

① 미상임.

### 3. 기타 참고사항

본건 기호 가)건물은 공부상 면적과 실측면적이 상이하여 실측면적으로 사정하였음..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I

## I. 감정평가 대상물건의 개요

소재지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882	
토 지	용도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이용상황	주상용
	지 목	대
	면 적	132 m <sup>2</sup>
건 물	구 조	목조
	주 용 도	주택
	사용승인	1955.03.20
	연 면 적	48 m <sup>2</sup>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I

## II. 감정평가방법의 적용

### 1. 감정평가의 방법

감정평가의 방법은 대상물건의 재조달원가에 감가수정을 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원가법, 대상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거래사례비교법,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및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1항에 따라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 토지와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하여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상 토지의 현황에 맞게 시점수정,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비교, 그 밖의 요인의 보정을 거쳐 대상토지의 가액을 산정하는 공시지가기준법, 대상물건이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이나 미래의 현금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수익환원법 등이 있음.

### 2. 감정평가방법의 결정

#### (1) 토지의 평가

토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및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1항에 의거 공시지가기준법으로 평가하되,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으로 그 합리성을 비교·검토하였음.

#### (2) 건물의 평가

건물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5조에 의거 구조, 사용자재, 시공상태, 마감재의 상태, 부대설비, 용도, 현상 및 관리상태 등을 종합 참작하여 원가법으로 평가하였으며,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대상 물건의 특성 등으로 인해 원가법 외의 다른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여 주된 방법 외 다른 방법에 의한 시산가액 비교·검토는 생략하였음.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I

## III. 감정평가액 산출과정

감정평가액 = 토지감정평가액 (공시지가기준법 및 거래사례비교법) + 건물감정평가액 (원가법)

### 1. 토지 감정평가액

#### (1) 대상 토지의 현황

일련 번호	소재지	면적 (m <sup>2</sup> )	지목	이용 상황	용도 지역	도로 교통	형상 지세	2024년 개별공시지가 (원/m <sup>2</sup> )
1	중구 남산동 882	132	대	주상용	3종일주	세로(가)	자루형 평지	1,206,000

#### (2) 토지 감정평가 시 고려사항

-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I

## (3)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토지 시산가액(단가) 산정

### 가. 비교표준지 선정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인근지역에 있는 표준지 중에서 대상 토지와 용도지역·이용상황·주변환경 등이 같거나 비슷하여 비교가능성이 있는 아래의 표준지를 선정함.

일련 번호	소재지	면적 (m <sup>2</sup> )	지목	이용 상황	용도 지역	도로 교통	형상 지세	2025년 공시지가 (원/m <sup>2</sup> )
A	중구 남산동 892	165	대	주상용	3종일주	세로(가)	세장형 평지	1,344,000

### 나. 시점수정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2항 제2호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월별로 조사·발표한 지가변동률로서 비교표준지가 있는 시·군·구의 같은 용도지역의 지가변동률을 적용함.

표준지 용도지역	지가변동률(%)	비 고
A 주거	0.295	대구광역시 중구 (25.01.01~25.04.04 ) 2025.01.01 ~ 2025.02.28 : 0.180 2025.02.01 ~ 2025.02.28 : 0.092 $( 1 + 0.00180 ) * ( 1 + 0.00092 * 35/28 ) \approx 1.00295$

※ 기준시점이 속한 월의 지가변동률은 미고시 상태인 경우, 최근 발표된 지가변동률을 기준으로 일수 안분하여 연장 적용함.

### 다. 지역요인 비교

지역요인 결정에 관한 의견	지역요인 비교치
본건은 비교표준지와 인근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지역요인은 동일함.	1.000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I

### 라. 개별요인 비교

■ 주택지대 [일련번호1 / 표준지A]

조 건	항목	세항목	격차율	비고
가로 조건	가로의 폭, 구조 등의 상태	폭	1.00	본건과 비교표준지가 대체로 대등함.
		포장		
		보도		
접근 조건	교통시설 및 상가와의 접근성 공공 및 생활 편의시설과의 접근성	계통 및 연속성	1.00	본건과 비교표준지가 대체로 대등함.
		인근대중교통시설과의 거리 및 편의성		
		상가와의 접근성 공공 및 편의시설과의 접근성		
환경 조건	일조 등	일조, 통풍 등	1.00	본건과 비교표준지가 대체로 대등함.
	자연환경	조망, 경관, 지반, 지질 등		
	인근환경	인근토지의 이용상황		
		인근토지의 이용상황과의 적합성		
	공급시설 및 처리시설의 상태	상수도		
		하수도		
위험 및 혐오시설 등	도시가스			
	변전소, 가스탱크, 오수처리장 등의 유무 특별고압선 등과의 거리			
획지 조건	면적, 접면너비, 깊이, 형상 등	면적	0.85	본건은 비교표준지 대비 형상등에서 열세함.
		접면너비		
		깊이		
		부정형지		
		삼각지		
	방위, 고저 등	자루형 획지		
		방 위		
		고 저		
	접면도로 상태	경사지		
		각 지		
행정적 조건	행정상의 규제정도	용도지역, 지구, 구역 등	1.00	본건과 비교표준지가 대체로 대등함.
		기타규제(입체이용제한 등)		
기타 조건	기타	장래의 동향	1.00	본건과 비교표준지가 대체로 대등함.
		기타		
개별요인비교치 (누계)			0.850	-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I

### 마. 그 밖의 요인 보정

#### (가) 그 밖의 요인 보정의 필요성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2항 제5호와 국토교통부 유권해석(건설부토정 30241-36538, 1991.12.28) 및 대법원판례(2003다38207(2004.05.14선고), 2002두5054(2003.07.25선고)) 등의 취지에 따라 대상토지의 인근지역 또는 동일수급권내 유사지역의 가치형성요인이 유사한 정상적인 거래사례 또는 평가사례 등을 고려하여 인근지역의 지가수준 및 지가균형 등을 적정하게 반영하기 위하여 그 밖의 요인의 보정이 필요함.

#### (나) 인근 토지의 가격수준

구 분	주위환경	도로조건	지가수준(원/㎡)	기타
-	주택 및 상가혼용지대	세로(가)	2,500,000-3,200,000	3층일주

본건 지역의 지가수준은 보합세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됨.

#### (다) 본건 평가사례

본건의 최근 3년 이내의 평가사례는 포착되지 아니함.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I

### (라) 인근 평가사례

일련 번호	소재지	토지 면적(m <sup>2</sup> )	용도지역	지목 이용상황	기준시점	평가목적	토지단가 (원/m <sup>2</sup> )	비고
(1)	중구 남산동 709-**	0.88	3종일주	대 단독주택	2022.06.16	공매(국 세,지방세 )	3,670,000	-
(2)	중구 남산동 599-**	205	3종일주	대 주상용	2024.07.16	담보	3,860,000	-

(출처: 한국감정평가사협회)

### (마) 인근 거래사례

일련 번호	소재지	용도지역 지목/이용상황	거래가액 (토지단가)	거래시점 사용승인일	토지면적 건물연면적	비고
#1	중구 남산동 703-**	3종일주 대/단독주택	190,000,000원 (@ 2,880,000원/m <sup>2</sup> )	2021.04.01 -	66m <sup>2</sup> -	-
	의견	1) 건물의 노후도 및 관리상태 등을 고려할 때 건물가액은 토지에 화체된 것으로 사료됨. 2) 토지가격 : 190,000,000원 / 66m <sup>2</sup> ≒ 2,880,000원/m <sup>2</sup>				
#2	중구 남산동 703-**	3종일주 대/단독주택	143,000,000원 (@ 3,110,000원/m <sup>2</sup> )	2021.04.26 1949.12.08	43m <sup>2</sup> 50.38m <sup>2</sup>	-
	의견	1) 목조 와즙지붕 1층 주택 건물단가 : 750,000원/m <sup>2</sup> X 10년/40년 ≒ 187,500원/m <sup>2</sup> 건물가격 : 187,500원/m <sup>2</sup> X 50.38m <sup>2</sup> ≒ 9,421,060원 2) 토지가격 : (143,000,000원 - 9,421,060원) / 43m <sup>2</sup> ≒ 3,110,000원/m <sup>2</sup>				

(출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I

## (바) 그 밖의 요인 보정치 산출

### ① 개요 및 산식

비교표준지와 용도지역·이용상황·주변환경 등이 유사한 평가사례를 선정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그 밖의 요인 보정치를 산출함.

$$\text{그 밖의 요인 보정치} = \frac{\text{평가사례기준 표준지가격 ( 사례단가 x 시점수정 x 지역요인 x 개별요인 )}}{\text{기준시점 현재 표준지가격 ( 표준지공시지가 x 시점수정 )}}$$

### ② 보정치 산정

#### < 비교표준지 A >

평가사례 기준 표준지가격 (a)	사례단가 <sup>1)</sup> (원/㎡)	시점 <sup>2)</sup> 수정	지역 <sup>3)</sup> 요인	개별 <sup>4)</sup> 요인	산출단가 <sup>5)</sup> (원/㎡)	격차율 (a/b)	보정치 결정
	3,860,000	1.00886	1.000	0.812	3,162,090	2.345	2.34
기준시점 현재 표준지가격 (b)	공시지가 (원/㎡)	시점 수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	산출단가 <sup>5)</sup> (원/㎡)		
	1,344,000	1.00295	-	-	1,347,965		

<sup>1)</sup>평가사례 : 비교표준지A와 용도지역, 이용상황, 주변환경 등이 유사하고 지리적으로 근접하여 비교가능성이 높은 평가사례(2)을 선정함.

<sup>2)</sup>시점수정(2024.07.16 ~ 2025.04.04, 중구 주거지역) : 0.886% (1.00886)

<sup>3)</sup>지역요인 : 비교표준지A는 평가사례(2) 인근지역에 소재하므로 지역요인 대등함.

<sup>4)</sup>개별요인 : 비교표준지A가 평가사례(2) 대비

개별요인 비교치 (주택지대)						격차율
가로 조건	접근 조건	환경 조건	획지 조건	행정적 조건	기타 조건	
0.90	0.95	1.00	0.95	1.00	1.00	0.812

<sup>5)</sup>산출단가 : 원단위 미만 절사.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I

### 바.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토지 시산가액(단가)

일련 번호	비교표준지		시점 수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	그 밖의 요인	산출단가 (원/m <sup>2</sup> )	시산가액 (단가)(원/m <sup>2</sup> )	비고
	일련 번호	공시지가 (원/m <sup>2</sup> )							
1	A	1,344,000	1.00295	1.000	0.850	2.34	2,681,101	2,680,000	주택지대

※ 산출단가: 원단위 미만 절사.

### (4)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토지 시산가액(단가) 산정

#### 가. 비교거래사례 선정

거래사례 선정에 관한 의견	비교 거래사례
본건의 인근지역에 위치하며, 가치형성요인이 유사하여 비교가능성이 가장 높은 거래사례를 비교거래사례로 선정함.	#2

일련 번호	소재지	용도지역 지목/이용상황	거래가액 (토지단가)	거래시점 사용승인일	토지면적 건물연면적	비고
#2	중구 남산동 703-**	3종일주 대/단독주택	143,000,000원 (@ 3,110,000원/m <sup>2</sup> )	2021.04.26 1949.12.08	43m <sup>2</sup> 50.38m <sup>2</sup>	-
	의견	1) 목조 와즙지붕 1층 주택 건물단가 : 750,000원/m <sup>2</sup> X 10년/40년 ≒ 187,500원/m <sup>2</sup> 건물가격 : 187,500원/m <sup>2</sup> X 50.38m <sup>2</sup> ≒ 9,421,060원 2) 토지가격 : (143,000,000원 - 9,421,060원) / 43m <sup>2</sup> ≒ 3,110,000원/m <sup>2</sup>				

(출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 나. 사정보정

사정보정에 관한 의견	사정보정치
비교거래사례는 매도자와 매수자 사이의 정상적인 거래사례로 보임.	1.00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I

### 다. 시점수정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2항 제2호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월별로 조사·발표한 지가변동률로서 비교거래사례가 있는 시·군·구의 같은 용도지역의 지가변동률을 적용함.

거래사례 용도지역	지가변동률(%)	비 고
#2 주거	7.471	대구광역시 중구 (21.04.26~25.04.04 ) 2021.04.01 ~ 2021.04.30 : 0.281 2021.05.01 ~ 2021.05.31 : 0.336 2021.06.01 ~ 2021.06.30 : 0.456 2021.07.01 ~ 2021.07.31 : 0.429 2021.08.01 ~ 2021.08.31 : 0.486 2021.09.01 ~ 2021.09.30 : 0.368 2021.10.01 ~ 2021.10.31 : 0.433 2021.11.01 ~ 2021.11.30 : 0.371 2021.12.01 ~ 2021.12.31 : 0.363 2022.01.01 ~ 2022.12.31 : 2.598 2023.01.01 ~ 2023.12.31 : 0.007 2024.01.01 ~ 2024.12.31 : 1.062 2025.01.01 ~ 2025.02.28 : 0.180 2025.02.01 ~ 2025.02.28 : 0.092  $( 1 + 0.00281 * 5/30 ) * ( 1 + 0.00336 ) * ( 1 + 0.00456 ) * ( 1 + 0.00429 ) * ( 1 + 0.00486 ) * ( 1 + 0.00368 ) * ( 1 + 0.00433 ) * ( 1 + 0.00371 ) * ( 1 + 0.00363 ) * ( 1 + 0.02598 ) * ( 1 + 0.00007 ) * ( 1 + 0.01062 ) * ( 1 + 0.00180 ) * ( 1 + 0.00092 * 35/28 ) \approx 1.07471$

### 라. 지역요인 비교

지역요인 결정에 관한 의견	지역요인 비교치
본건은 비교거래사례의 인근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지역요인은 동일함.	1.000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I

### 마. 개별요인 비교

■ 주택지대 [일련번호1 / 거래사례#2]

조 건	항목	세항목	격차율	비고
가로 조건	가로의 폭, 구조 등의 상태	폭	1.00	본건과 사례가 대체로 대등함.
		포장		
		보도		
		계통 및 연속성		
접근 조건	교통시설 및 상가와의 접근성 공공 및 생활 편의시설과의 접근성	인근대중교통시설과의 거리 및 편의성	0.90	본건이 사례 대비 인근 대중교통시설과의 거리 및 편의성에서 열세함.
		상가와의 접근성		
		공공 및 편의시설과의 접근성		
환경 조건	일조 등	일조, 통풍 등	1.00	본건과 사례가 대체로 대등함.
	자연환경	조망, 경관, 지반, 지질 등		
	인근환경	인근토지의 이용상황		
		인근토지의 이용상황과의 적합성		
	공급시설 및 처리시설의 상태	상수도		
		하수도		
도시가스				
위험 및 혐오시설 등	변전소, 가스탱크, 오수처리장 등의 유무 특별고압선 등과의 거리			
획지 조건	면적, 접면너비, 깊이, 형상 등	면적	0.90	본건이 사례 대비 형상등에서 열세함.
		접면너비		
		깊이		
		부정형지		
		삼각지		
	방위, 고저 등	자루형 획지		
		방 위		
		고 저		
	접면도로 상태	경사지		
		각 지		
행정적 조건	행정상의 규제정도	용도지역, 지구, 구역 등	1.00	본건과 사례가 대체로 대등함.
		기타규제(입체이용제한 등)		
기타 조건	기타	장래의 동향	1.00	본건과 사례가 대체로 대등함.
		기타		
개별요인비교치 (누계)			0.810	-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I

### 바.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토지 시산가액(단가)

일련 번호	거래사례		사정 보정	시점 수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	산출단가 (원/m <sup>2</sup> )	시산가액 (단가)(원/m <sup>2</sup> )
	일련 번호	토지단가 (원/m <sup>2</sup> )						
1	#2	3,110,000	1.000	1.07471	1.000	0.810	2,707,301	2,710,000

※ 산출단가: 원단위 미만 절사.

### (5) 시산가액 조정 및 토지 평가단가의 결정

#### 가. 토지 시산가액(단가) 검토

일련번호	공시지가기준법 (원/m <sup>2</sup> )	거래사례비교법 (원/m <sup>2</sup> )	비고
1	2,680,000	2,710,000	-

#### 나. 토지 평가단가의 결정 및 결정의견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이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그 객관성·합리성이 인정되는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및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1항에 따라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단가)으로 평가단가를 결정함.**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I

### 2. 건물 감정평가액

#### (1) 대상 건물의 현황

일련 번호	규모	구조	용도	연면적(m <sup>2</sup> )	사용승인일	건물 관리상태
가	1층	목조 와즙지붕	주택	36.26	1955.03.20	중

부대설비 내역									
일련 번호	난방	냉방	위생	급배수	소화 설비	화재 탐지	승강기	도시 가스	기타
가	0	—	0	0	—	—	—	—	—

#### (2) 건물 감정평가 시 고려사항

본건 건물은 공부면적과 실측면적이 상이한바 실측면적으로 사정하였음.

#### (3) 재조달원가 결정

일련 번호	구조	표준단가 (원/m <sup>2</sup> )	보정단가 (원/m <sup>2</sup> )	재조달원가 (원/m <sup>2</sup> )	내용 년수	비고
가	목조 와즙지붕	900,000	-	900,000	45	1층 (주택)

※ 상기 기준단가는 '한국부동산연구원 건축물 재조달원가 자료집'을 참조하되 본건물의 신축년도, 건축자재, 동  
. 유사 규모 및 용도의 신축가격, 시장에서 거래되는 동향 및 본 평가목적에 고려하여 재조달원가를 결정하였음.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I

※ 한국부동산연구원 건축물 재조달원가 자료집 (2024년 1월 기준)

분류번호	용도	구조	급수	표준단가 (원/m <sup>2</sup> )	내용년수
01-01-01-01	일반주택	목조/목조지붕틀/시멘트기와	5	949,000	40 (35~45)

### (4) 감가수정 및 적용단가 결정

일련 번호	이용상황	재조달원가 (원/m <sup>2</sup> )	내용 년수	경과년수		잔존 년수	잔가율	적용단가 (원/m <sup>2</sup> )	비고
				실제	유효				
가	1층 (주택)	900,000	45	70	20	25	25/45	500,000	-

\* 관찰감가를 병용함.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I

## IV. 감정평가액 결정에 관한 의견

### 1. 감정평가액의 결정

본건 평가대상 부동산의 입지적 여건, 이용상황, 제반 공법상의 제한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고, 평가목적 을 감안하여 아래와 같이 감정평가액을 결정함.

감정평가액	토 지	353,760,000
	건 물	24,000,000
	제시외물건	11,685,000
	합 계	389,445,000

결정의견	경매로서의 안정성과 환가성 등을 참작하고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 및 참고가격 자료(평가사례, 인근 부동산 탐문조사에 의한 가격수준을 고려할 때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토지 감정평가액 및 원가법에 의한 건물 감정평가액의 합리성이 인정되는바, 상기 평가액의 합계액으로 대상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함.
------	---

### 2. 기타 참고사항

# 토지 감정평가요항표

- |               |                       |                |
|---------------|-----------------------|----------------|
| (1) 위치 및 주위환경 | (2) 교통상황              | (3) 형태 및 이용상태  |
| (4) 인접 도로상태   |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
| (7) 공부와의 차이   |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                |

##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소재 '명덕초등학교'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기존 주택지대로서 단독주택,아파트단지,근린생활시설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대구지하철 1호선이 통과하는등 주거지로서 교통상황은 보통시됨.

## (3) 형태 및 이용상태

자루형의 토지로서 주거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 (4) 인접 도로상태

본건 서측으로 폭 약 8미터의 포장도로와 접함.

##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일련번호(1)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소로2류(폭 8m~10m)(접합),  
상대보호구역(동부교육청문의(606-5146),경북여자고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동부교육청문의(606-5146),대구명덕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추가기재>가축사육제한구역

##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별첨 '지적및 건물개황도'와 같이 제시외 건물 3동이 소재함.

## 토지 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4) 인접 도로상태  
(7) 공부와의 차이

(2) 교통상황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3) 형태 및 이용상태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7) 공부와의 차이**

없음.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임대관계 : 미상임.  
기 타 : 없음.

## 건물 감정평가요항표

(1) 건물의 구조  
(4) 부합물 및 증물

(2) 이용상태  
(5) 공부와의 차이

(3) 설비내역  
(6) 기타 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 (1) 건물의 구조

목조와즙 단층건으로서  
외 벽: 몰탈위 페인팅등 마감  
내 벽: 벽지 및 타일등 마감  
바 닥: 장판지,타일등임  
창 호: 목재 및 새시창임.

### (2) 이용상태

단독주택으로 이용중임.

### (3) 설비내역

난방설비,급.배수 및 위생설비등 되어있음.

### (4) 부합물 및 증물

별첨 "지적및 건물개황도와 같이 증물로 사료되는 제시외 건물 3동이 소재함.

### (5) 공부와의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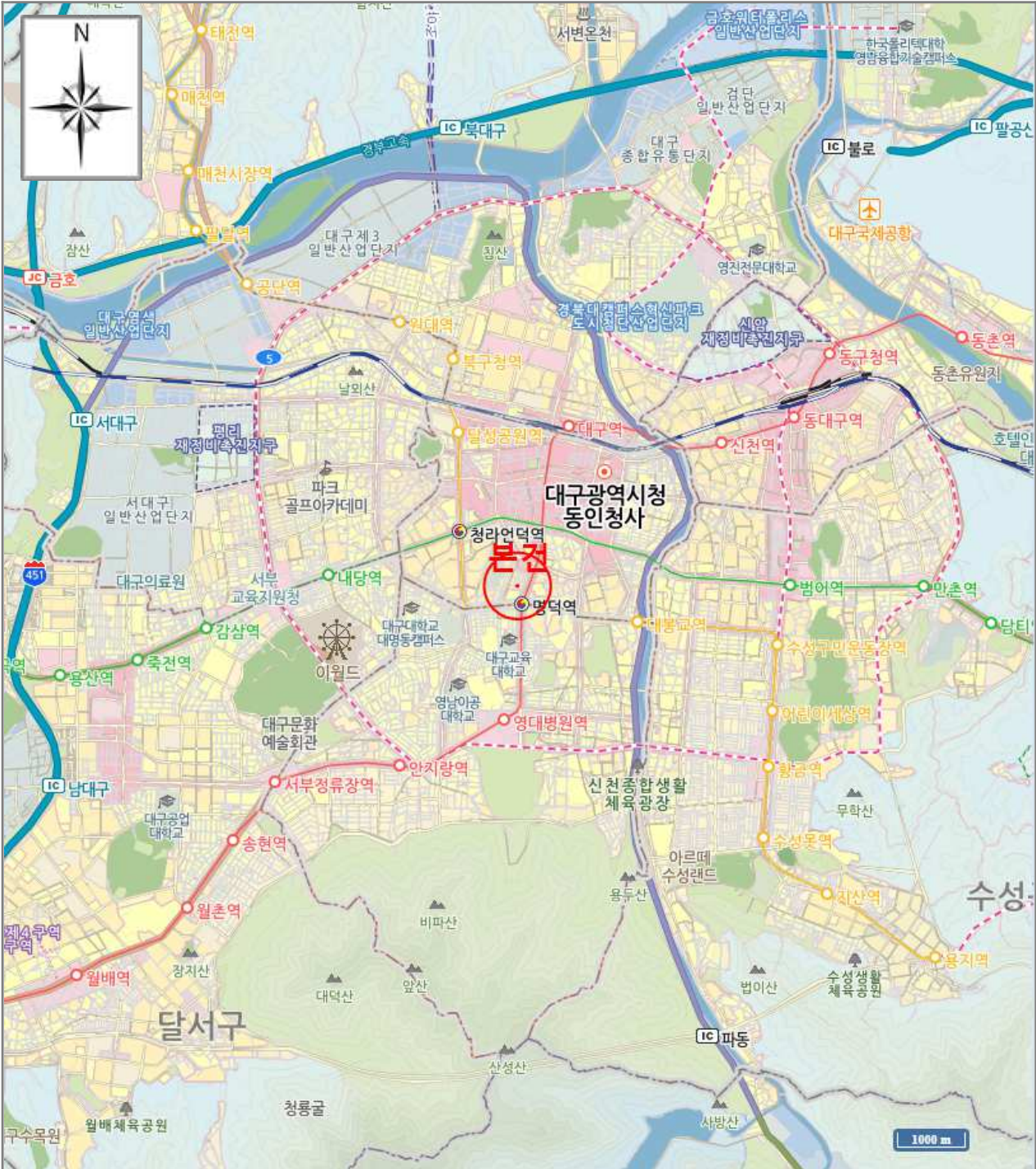
본건 기호 가)건물은 공부상 면적이 36.26㎡이나 실측면적은 약48㎡ 인바 실측면적으로 사정함.

### (6)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임대관계 : 미상임.  
기 타 : 없음.

# 광역 위치도

소재지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882
-----	------------------



- [ 범례 ]
- 본 건
- 표준지
- 평가사례
- 거래사례

# 상세 위치도

소재지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882
-----	------------------



[ 범례 ]

■ 본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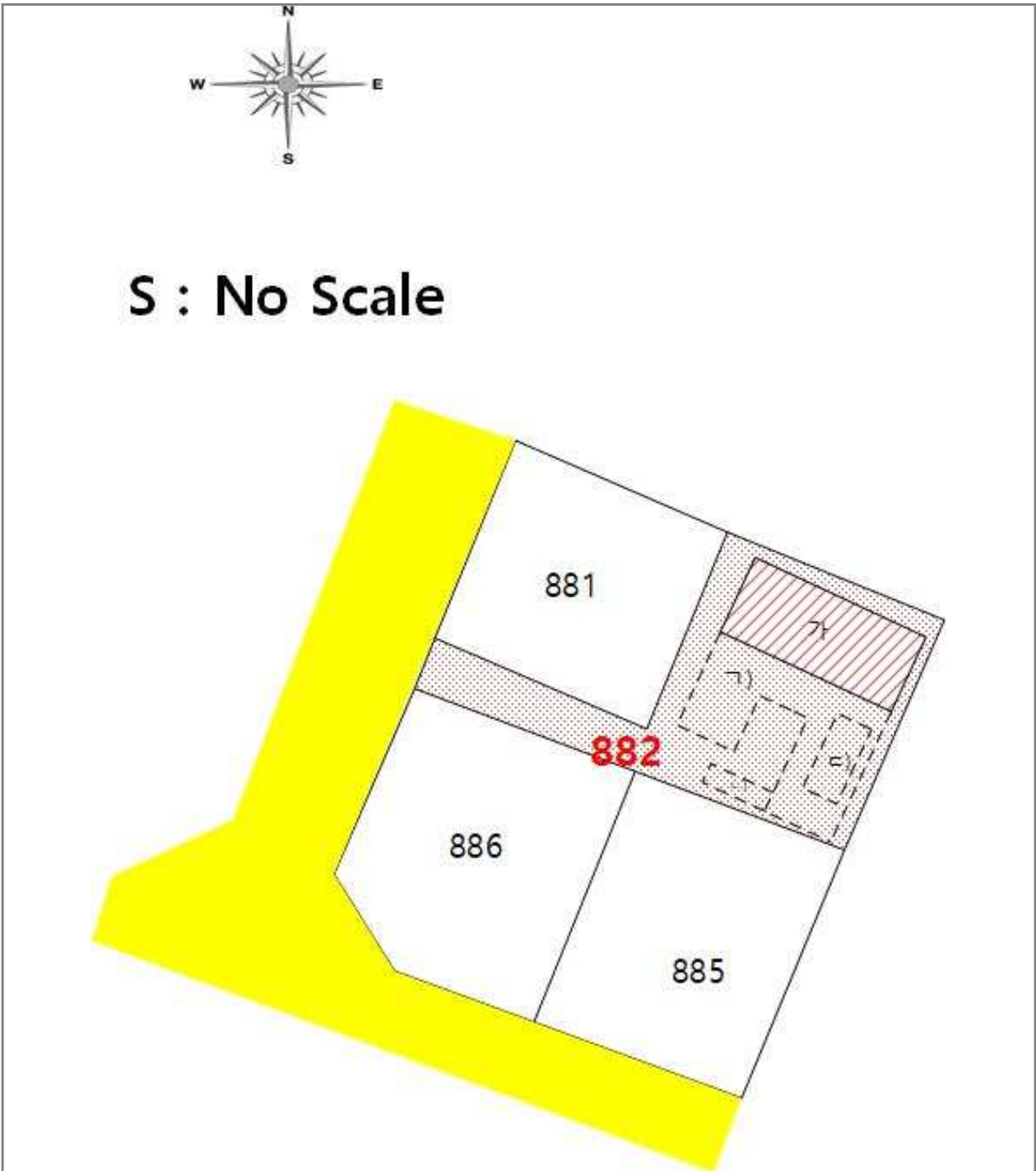
■ 표준지

■ 평가사례

■ 거래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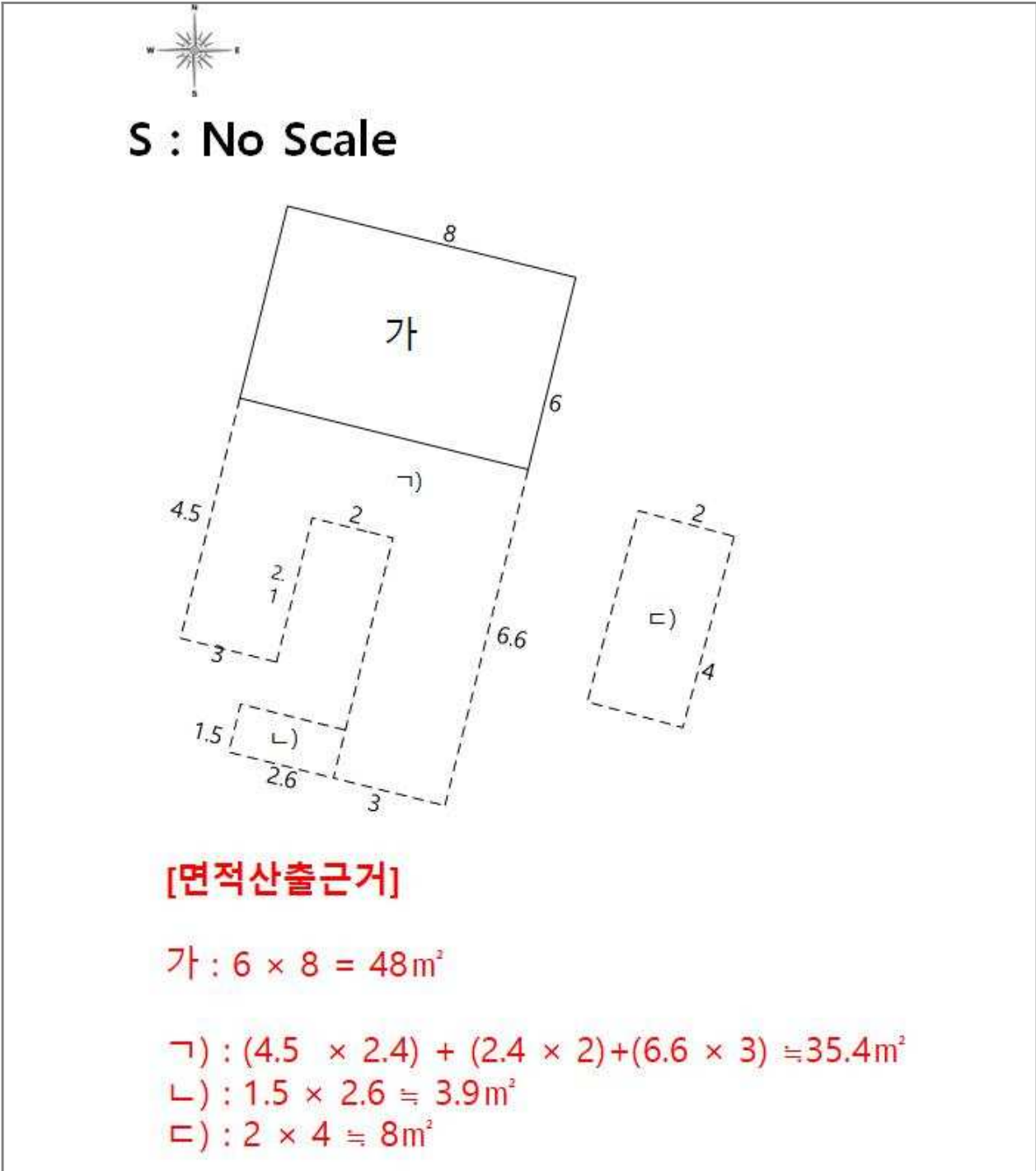
# 지적 및 건물개황도

소재지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882
-----	------------------



# 건물개황도

소재지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882
-----	------------------



# 사 진 용 지

소재지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882



본건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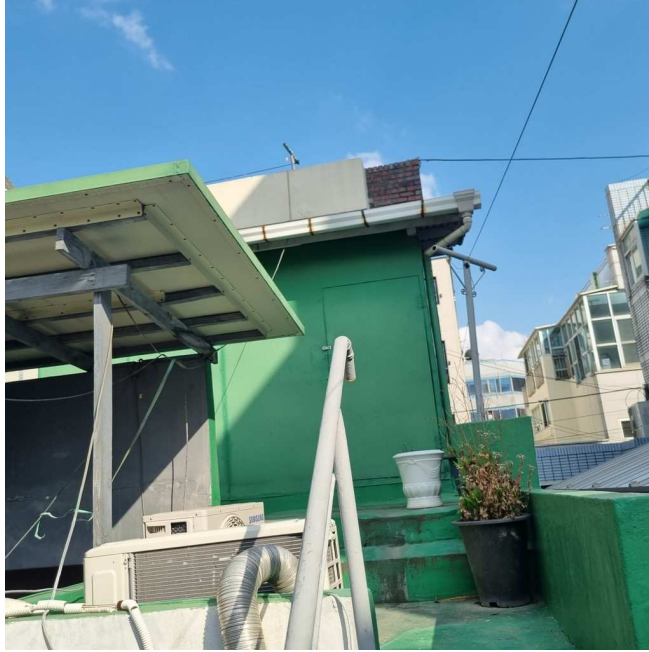


본건 기호 가)건물

# 사 진 용 지

소재지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882



제시외 건물 ㄷ)



제시외 건물 ㄱ,ㄴ)

# 수수료 청구서

감정평가서번호 : 보람W25032801

대구지방법원 경매1계 귀하

의뢰번호 : 2025타경7665

**팔십오만오천팔백원정 (₩855,800.-)**

2025-03-26 일자 귀 제 『 2025타경7665 』 호로 의뢰하신 『 최상호 소유물건(2025타경7665) 』 건에 대한 감정평가가 완료 되었으므로 상기 금액을 "감정인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 에 의거 청구하오니 정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청구내역-

과목	금액	비고
가.평가수수료	498,711	$(250,000 + (339,445,000 \times 11/10,000)) \times 0.8$
나.여비	212,000	
토지조사비	15,000	1필지 x 15,000 【물건조사비】4동 x 10,000
물건조사비	40,000	
공부발급비	9,090	
임대차조사비	-	
기타 실비	4,000	
특별용역비	-	
소계	280,090	
수수료합계(공급가액)	<b>778,000</b>	* 1,000원미만절사
부가가치세(세액)	77,800	
총계	<b>855,800</b>	
기납부 착수금	-	
정산 청구액	<b>855,800</b>	

※ 위 금액을 아래 계좌로 송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보람감정평가사사무소 사업자등록번호 : 694-44-01055

★계좌번호★

농협 302-1904-9017-61 최원호(보람감정)

**보람감정평가사사무소**

( TEL : 010-4521-8990 FAX : 0505-182-4521 )

# 회 보 서

우)42244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범로46길 36 101호  
E-Mail : boram2024@kapaland.co.kr

TEL. 010-4521-8990  
FAX. 0505-182-4521

문서번호 : 보람W25032801호

시행일자 : 2025. 04. 07

수 신 : 대구지방법원  
사법보좌관 이종식

참 조 : 경매1계

제 목 : 감 정 평 가 회 보

1. 우리 보람감정평가사사무소의 업무에 협조하여 주심에 대하여 감사드리오며, 귀 법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문서 2025.03.26자 귀 제 2025타경7665호로 의뢰하신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882 소재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 결과를 별첨과 같이 회보합니다.

별 첨 : 1. 감정평가서 2 부  
2. 청구서 1 부 끝.

보람감정평가사사무소